

의안
번호

38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육영 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 제387호

다. 제출일자 : 2024. 11. 06.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성북구의 장수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지급대상자 규정(안 제3조~제5조)
- 다.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 명시(안 제6조, 제7조)
- 라. 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안 제8조, 제9조)
- 마.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을 관리(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08. ~ 2024. 11.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성북구의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노인 복지증진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 100세 도래 대상 어르신 인구 현황

(’24. 9월 현재)

사업년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인구수 (나이)	66명 (100세 이상)	35명 (99세)	55명 (98세)	87명 (97세)	138명 (96세)	161명 (95세)
소요예산	50,500천 원		27,500천 원	43,500천 원	69,000천 원	80,500천 원

※ 소요예산 산출은 ’24. 9월 기준 인구수로 100세 도래시 1인 500,000원 산출하였으나 사망 등의 사유로 100세 도래 인구 감소 예상

□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장수축하물품 지급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장수어르신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장수 축하물품은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으로 규정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안 제3조(지급대상)

-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을 신청일 현재 성북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규정함

다. 안 제4조(지급내용)

-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규정함

라. 안 제5조(지급기준)

-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기준일을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날로 하되, 전입 등의 사유시에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

마. 안 제6조(신청안내)~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말까지 안내문을 송부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규정과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바. 안 제8조(지급 제외)~ 제9조(환수 조치)

- 장수축하물품 지급제외 대상과 환수 조치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부당 또는 불합리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대해 규정함

사. 부칙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특례)

-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안 제3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충족한 장수

어르신들에게도 장수 축하용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00세이상인 사람을 “장수어르신”으로 정의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¹⁾에 사회보장제도²⁾(복지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에 따라 ‘24. 11월 협의 완료³⁾ 통보되었기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 추진상 문제는 없음.
다만, 사업대상자가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 4개구(강북, 도봉, 중랑,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중

-
-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1.“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3) 사회보장조정과-5618(2024. 11. 7.) 서울 성북구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